



중앙방역대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판)」 배포 및 후속조치 요청

1. 관련

-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6.27.)
- 나. 중앙방역대책본부-7144(2021.4.9.)호
-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83조

2.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판)」을 붙임1과 같이 개정·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실외 활동 시 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

*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자

나. 시행예정일: 2021. 7. 1.(목)

3. 각 지자체에서는 행정명령 적용 시 중앙부처 가이드라인 원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 시간 및 기간의 '추가지정'은 가능하나, 완화하는 방향의 조정은 불가

4. 행정사항

- 가. '시·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오니, 붙임2에 시·도 취합 작성 후 7.5일(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판)」 1부.
2.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현황 서식 1부. 끝.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수신자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사혁신처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법무부장관, 통일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산림청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서울특별시(감염병관리과장), 부산광역시(시민방역추진단장), 대구광역시(사회재난과장), 인천광역시(감염병관리과장), 광주광역시(감염병관리과장), 대전광역시(감염병관리과장), 울산광역시(재난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보건정책과장), 경기도지사(사회재난과장), 강원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충청북도지사(식의약안전과장), 충청남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전라북도지사(보건의료과장), 전라남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경상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건강위생과장)

보건연구사 양지연 보건연구관 김정연 환자관리·지침팀 장 박진 방역지원단장 전결 2021.6.28. 박혜경

협조자

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12912 접수 학생건강정책과-5497 (2021. 6. 29.)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중 / http://www.kdca.go.kr
 양방역대책본부

전화번호 043-719-9360 팩스번호 043-719-9467 / jjeonyang@korea.kr / 비공개(5)

질병정보 궁금할때, 감염병이 의심될 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